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6.

발 의 자 : 이상식 · 허 영 · 용혜인
양부남 · 임호선 · 이개호
안도걸 · 이병진 · 이기현
이광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,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고,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하며,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함.

하지만 현행법 상 경영공시 기준에 따른 중앙회의 경영공시는 불투명하고, 불성실한 공시라는 비판이 있고, 행정안전부의 공적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이에 행정안전부의 관리·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상황

및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경영공시 사항 및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명령 사항을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안전부의 관리·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5조).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 중 “대통령령으로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이”로, “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”를 “공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
2.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금고의 건전성·수익성·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
4. 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결과
5. 제77조제3항에 따른 이행 명령 및 그 조치결과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영상태 개선 조치 이행명령의 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) 제75

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77조제3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금고 또는 중양회에 대한 경영상태 개선 조치 이행을 명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(경영공시) 금고와 중앙회 는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바에 따라 <u>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 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</u> 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75조(경영공시) ----- -- <u>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</u> <u>주무부장관이</u> ----- ---- <u>공시하여야</u> -----. 1. <u>채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</u> 2. <u>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</u> <u>사항</u> 3. <u>금고의 건전성 · 수익성 · 생</u> <u>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</u> <u>에 관한 사항</u> 4. <u>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</u> <u>까지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</u> <u>조치결과</u> 5. <u>제77조제3항에 따른 이행 명</u> <u>령 및 그 조치결과</u> 6.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공시 사항</u>